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김상조 의원 외 10인

2. 제안이유

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
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
정신을 함양코자 함

3. 주요내용
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
법률」 제4조,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「5·18민
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
유공자와 그 유족(수권자)이 관내에서 신청,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
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함(안 제6조제1항제3호)

4. 참고사항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6조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관내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의원발의로 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, 참전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(수권자)에 대하여
- 관내에서 신청,등록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해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.